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31

2025/2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김지혜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67)

Contents

국제기구/ 국제규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2

FAO ALDFG 근절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모범 사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7

WCPFC WCPFC, 어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채택

세계무역기구(WTO) 10

WTO 세계무역기구(WTO) 총회에서 개혁 논의와 심화 필요성 강조

지역별 동향

아시아 13

한국-중국 중국, 한중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무단 설치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전문연구원 황수연

ALDFG 근절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모범 사례

해양에서 ‘버려지거나 분실 및 폐기된 어구(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이하 ALDFG)’는 가장 해로운 형태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원으로 유령어업(ghost fishing), 서식지 파괴, 항해 위험 증가 등 해양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기존의 어구 관리 프레임워크는 단편적이며 어구의 전주기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국제사회는 어구의 전주기 관리¹⁾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케냐 키부유니(Kibuyuni) 마을의 생분해성 어구를 활용한 해초 생산 시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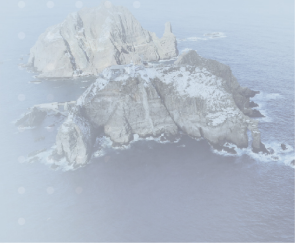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출처: Sustainable Seas Trust(2023)

WB ‘어구 전주기 관리 단계별 모범 사례’

세계은행(World Bank)이 2024년 12월 발간한 보고서 「바다에서 길을 잃다 (LOST AT SEA)」에서 어구 전주기 관리 단계별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생산 단계) 생분해성 재료를 사용한 어구 시범 사업: Catchgreen社は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생분해성 소재인 Biodolomer®Ocean 로프로 케냐

1) 전주기 관리(full life cycle management)는 플라스틱 협약에서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관리·유지 보수, 손실 또는 폐기, 회수 및 처리, 재활용 등 모든 단계를 포괄하여 관리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전통 자망 어업에 사용되는 그물의 헤드라인(headline)과 리드라인(lead line), 해초 생산 로프를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하여 시범 사업 추진 중이다.

(소비 단계) 어구 손실을 줄이기 위한 어획량 분배 프로그램: 국제태평양 대구위원회(IPHC)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북동 태평양 지역의 어획일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은대구 개별 어획 할당량(IFQ)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어업 시 어구 손실 비율(총 어획량당 손실)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어획량 분배를 통해 어구 충돌 감소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어구 손실 및 유령어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및 처리) 아이슬란드 어업인 단체의 자체 재활용 시스템 구축: 2005년 아이슬란드 어업선주연합(FIFVO)은 어업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체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입 초기에는 어업인이 직접 어구를 분해, 세척, 포장, 운송(추가 작업 수행 시 작업비 지급, 미수행 시 비용 지불)하였으나 현재는 어구 제조업체가 어구 분해, 포장, 운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어구 제조업체는 회수한 어구를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다.

EU ‘어구 및 양식 장비의 순환 설계에 대한 유럽표준’ 수립

EU는 2024년 11월 유럽표준화위원회(the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가 ‘어구 및 양식 장비의 순환 설계에 대한 유럽표준 (European standards for the circular design of fishing gear and aquaculture equipment, 이하 어구설계 유럽표준)²⁾’을 발표했다.

EU는 해양 플라스틱 및 폐어구 회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된 ‘어구설계 유럽표준’은 어구 및 양식 장비의 순환 설계 및 수명 주기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어구설계 유럽표준은 어구의 초기 설계부터 폐기 또는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를 포괄하는 효과적인 재사용, 수리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어구설계 유럽표준은 원형 설계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사용 설명서 및 라벨링, 기술 요구 사항, 환경·순환성 요구 사항, 순환 비즈니스 모델, 어구·양식 장비 구성 요소 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2) 어구 및 양식 장비의 순환 설계에 대한 유럽표준(EN 17988)은 2021년 어구 및 양식 장비의 순환성과 재활용성이 어구 순환 설계에 대한 표준화 요청(CEN/TC 466) 및 '위원회 이행 결정 (M/574)에 따라 개발되었다.



표 1. EU ‘어구 및 양식 장비의 순환 설계에 대한 유럽 표준’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부: 원형 설계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및 지침	-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요구사항, 권장 사항 및 지침을 제공 - 현재 유럽 상황에서 어구 및 양식 장비에 대한 순환설계의 일반 원칙 소개 - 이해관계자와 가치 네트워크의 중요성 강조
2부: 사용 설명서 및 라벨링	- 순환 설계된 어구 및 양식 장비의 사용 설명서, 라벨링 요구 사항, 권장 사항 및 지침 - 어구 및 양식 장비의 수명 동안 추적 가능성과 적정 관리를 지원함
3부: 기술 요구사항 및 지침	- 어구 및 양식 장비의 전주기에 적용되는 기술적 요구사항, 권장사항 및 지침 제공 - 설계 시 기술적 요구사항, 수리, 재사용 및 개조, 보관 및 운송, 재활용
4부: 환경·순환성 요구 사항 및 지침	- 환경성 및 순환성 요구 사항 - 재료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로 손실되는 플라스틱 양을 줄이면서 최상의 환경적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5부: 순환 비즈니스 모델	- 장기간 제품 용도를 유지하고 다른 부문과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형 사업 모델 개발 - 어구 및 양식 장비에 대한 확장 생산자 책임(ERP) 제도에 대한 지원 지침 포함
6부: 어구·양식 장비 구성 요소 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한 요구사항	어구 및 양식 장비 제품 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요구사항, 라벨링 및 정보공유에 대한 사항

표
출처:
유럽
표준화
위원회

FAO/IMO ‘어구 재활용 기술 및 모범 사례’

국제해사기구(IM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23년 GloLitter 프로그램³⁾을 통해 전 세계 어구 재활용 기술 및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는 덴마크 Plastix社⁴⁾의 어구를 고품질 플라스틱 펠렛으로 재가공하여 재활용한 사례, 스페인 OCEANETS 프로젝트를 통한 폐어구에서 재생 나일론 섬유(ECONYL)를 추출한 사례, 우리나라의 수거 폐어구를 에너지화하거나 재활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그림 2. Plastix社 폐어구 재활용을 통해 그림 3. PA 폐어망 세척 완전 재활용 라인 생산한 플라스틱 펠렛



그림 출처: (좌) Plastix 홈페이지
(우) 고승양산업 홈페이지

그 외 폐어구 재활용 기술 사례로 대만의 고승양산업(ko win yang industrial co ltd)⁴⁾社의 ‘PA 폐어망 세척 완전 재활용 라인’을 소개한다. ‘PA 어망 세척 완전 재활용 라인’은 PVC, PA, PP, PE 등 혼합 플라스틱

3) 국제해사기구(IM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의 해양 운송 및 어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4) 1980년에 설립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및 재생산 기계 터키 플랜트 제조업체로 플라스틱 재활용 기계, 플라스틱 압출-펠렛화 기계 등을 15여 개 제품을 생산하며 특히 인도와 베트남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



소재 어망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폐어망의 세척 등 공정을 통해 섬유나 기타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망 플레이크를 생산할 수 있다.

ALDFG 근절을 위한 수산물 공급망 이해관계자별 역할

2021년 국제유령어구 이니셔티브(Global Ghost Gear Initiative, 이하 GGGI)는 어구 관리 및 양식 시설 관리를 위한 모범 사례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GGGI는 보고서에서 ALDFG 어업인뿐만 아니라 수산물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말한다. 특히 어구 설계 및 생산에서부터 사용,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 기업, 소비자, 비정부기구 등 모든 이해관계자 공동의 해결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표 2. ALDFG 근절을 위한 수산물 공급망 이해관계자별 역할

구분	내용
어구 제조업체 (Gear designers, manufacturers and retailers)	-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생분해성 재료 사용 - RFID, GPS, QR 코드 등으로 어구 추적 시스템 도입 - 재활용 용이한 소재(예: 단일 플라스틱, 천연섬유 등) 활용
어업인 (Fishers and vessel operators)	- 어구 분실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사용 및 관리 방식 적용 (고위험 지역에서 어구 사용 자제, 침수 시간 단축 등) - 어구 표시 및 식별 장치 부착 - 분실된 어구를 회수 및 신고하는 시스템에 적극 참여
어선단 및 어업인 단체 (Fleet operators and fisheries organizations)	- 어선단 및 어업인 단체에 특화된 행동 강령 마련 - 타 기관과 협력 - 어구 손실 모니터링
항만 운영자 (Port operators)	- 어구 회수 및 재활용 인프라 구축 - 재활용 이니셔티브에 통합
어업 관리자 (Fisheries control agencies)	- 어구 분실 및 폐기에 대한 보고 시스템 개발 - 어구 표시 및 식별 규정 시행
과학자 및 연구기관 (Fisheries and aquatic environment research)	- ALDFG 영향 평가 연구 및 데이터 수집 - 친환경 어구 기술 개발 및 실험적 도입 지원 -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어구 재활용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 연구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관 (Seafood ecolabel standard and certificate holders)	- 어구 손실, 유령어업을 수산물 지속가능성 기준에 포함 - 어구 손실 및 유령어업에 대한 지원 지침 제공
수산물 가공업체 (Seafood Businesses)	-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 공급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해양 친화적인 인증(예: MSC, ASC 등)을 준수하는 어업 지원
비정부기구 (NGOs)	- 해양 환경 보호 캠페인, 정보 수집 수행 - 정책 개선을 위한 포럼 참석, 정보 제공에 기여 - 취약한 지역에서 ALDFG 복구 활동
국제개발기금기구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funding agencies)	ALDFG 근절을 위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투자 장려
정부 및 정책 입안자 (councils and authorities)	- ALDFG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 항구 내 어구 폐기 및 재활용 시설 확충 지원

표 출처:
GGGI
(2021)
48-49p



정책적 시사점

ALDFG 문제 해결 위해서는 국제적인 표준화, 협력 체계 구축,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 마련, 재활용 및 순환 경제 촉진, 재정 지원 등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어구 전주기 관리 및 ALDFG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어구 폐기물 관리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라스틱 어구의 전주기에 걸친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기여 정도를 파악하고 기존의 국제 해양규범을 기반으로 기존 이니셔티브를 보완 및 종합화할 수 있는 어구 관리 규범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사회는 ALDFG 해결방안으로 어구의 생분해성 소재 및 플라스틱 대체품 활용 대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부족하고 대체품 활용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대체품 도입 시기를 지연시키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정부, 어업 관계자, 비정부기구(NGO) 간 협력하고 정보 교환 및 연구 협력 촉진, 기존 지역해 프로그램 등 매커니즘을 유지하면서 중복 제거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폐어구 재활용 생산품을 산업 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어구 관리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 출처 : [1] 세계은행(World Bank), 「바다에서 길을 잃다(LOST AT SEA)」(2024)
 [2] 유럽표준화위원회, <https://www.cencenelec.eu/news-and-events/news/2025/eninthspotlight/2025-01-16-en-17988-fishing-gear/>(검색일: 2025.2.24.)
 [3] Plastix, <https://plastixglobal.com/>(검색일: 2025.2.24.)
 [4] 고승양산업, <https://www.kowinrecycle.com/Fishnet-Waste-Turn-Key-Washing-Recycling-Line.html>(검색일: 2025.2.24.)
 [5] FAO, 「어구 재활용 기술 및 모범 사례(Fishing gear recycling technologies and practices)」(2023)
 [6] GGGI 「어구 관리 모범 사례 프레임워크(Best Practice Framework for the Management of Fishing Gear)」(2021)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WCPFC

전문연구원 김지혜

WCPFC, 어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채택

2024년 12월 제21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에서 ‘선원 근로 기준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Crew Labor Standards)⁵⁾’가 논의를 시작한지 4년 만에 채택되었다. WCPFC는 2016년 동태평양 환적 어선에서 근무 중이던 옹서버가 바다에서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옹서버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2018년에는 어선원을 위한 노동기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어선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일부 지역수산기구(RFMOs)에서도 어선원 근로기준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어선원의 노동 기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 곳은 WCPFC가 최초이다.

그림 4. 주요 참치 RFMO의 협정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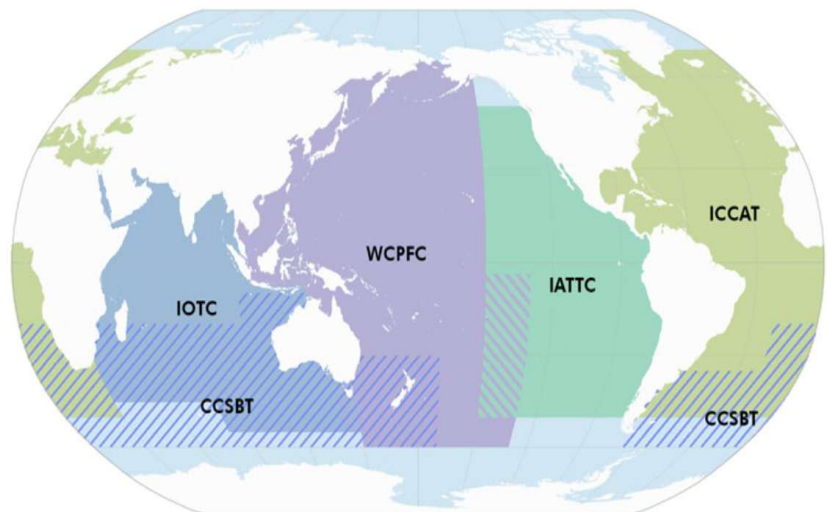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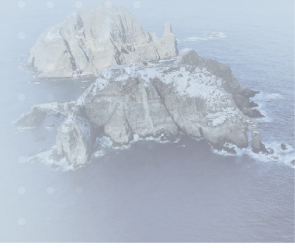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출처: Pewtrusts.org, WWF
Korea에서 재인용(2025.2.21.)

WCPFC의 선원 노동 기준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는 WCPFC 협약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도록 허가 받은 어선들의 선상에서의 최소 근로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선원이 중병에 걸리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선원이 실종되거나 선외로 추락한 경우 △강제 노동 및 기타 부당 대우가 발생한 경우 등에 관한 기국의 책임에 대해

5) WCFP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2024-04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존관리조치의 적용 범위, 개도국들의 특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WCPFC 회원국들은 이번 채택된 보존관리조치가 발효되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ILO는 전 세계적으로 12만 8천 명의 어선원들이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하 IUU 어업)에 연루된 어선은 착취, 강제 노동, 부채 속박,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제 등 노동 착취 행위에 흔히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근로환경 기준 개선과 노동인력의 권리 보호 노력은 IUU 어업 대응 노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사점

WCPFC가 지난 12월 채택한 선원 노동 기준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는 지역수산기구(RFMOs) 중 어선원의 노동 기준에 대해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채택한 최초의 RFMO로, 다른 RFMO에게도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UU 어업과 노동 및 인권유린 문제 간의 연관성이 높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도 어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24년 3월에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처우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 시민단체, 산업계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와 국제해저기구가 해저 관련 활동 부문에서의 노동인력의 생명과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 해양수산 전체 분야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 출처 : [1]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Crew Labour Standards' (CMM 2024-04)
 [2] WCPFC, 'Resolution on Labour Standards for Crew on Fishing Vessels' (Resolution 2018-01)
 [3] WWF, 'WWF Commends WCPFC for First-Ever Adoption of Crew Labour Standards; Reforms Needed to Strengthen Measures and Governance' (검색일: 2025.2.21.)
 [4] ILO·ISA,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2024.12.19.)



- [5] Stanford University, <https://oceansolutions.stanford.edu/key-initiatives/addressing-illegal-fishing-and-labor-abuses>(검색일: 2025.2.21.)
- [6] WWF Korea, https://www.wwfkorea.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9&ht=(검색일: 2025.2.21.)
- [7] 이주와 인권연구소, <https://mihu.re.kr/archives/?vid=106>(검색일: 2025.2.21.)
- [8] 해수부 보도자료(2024.3.26.),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시민단체·산업계가 함께 뭉쳤다'(검색일: 2025.2.21.)



세계무역기구

WTO

전문연구원 황수연

세계무역기구(WTO) 총회에서 개혁 논의 심화 필요성 강조

세계무역기구(WTO) 총회 개최

2025년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총회가 2025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의에서는 2024년 연례보고서(WT/ACC/47-WT/GC/269), 전자상거래협정 결정 초안(WT/GC/W/963), 지난 제13차 각료회의(2024.2.26.~3.2., 아부다비) 결과 후속 조치를 검토하였다. 2024년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제13차 각료회의에서 코모로와 동티모르의 WTO 가입 결정 후 작업 진행 사항 및 그 외 국가의 가입을 위한 준비 진행 사항을 검토했다.

그림 5. WTO 가입 협상 진행 현황(2024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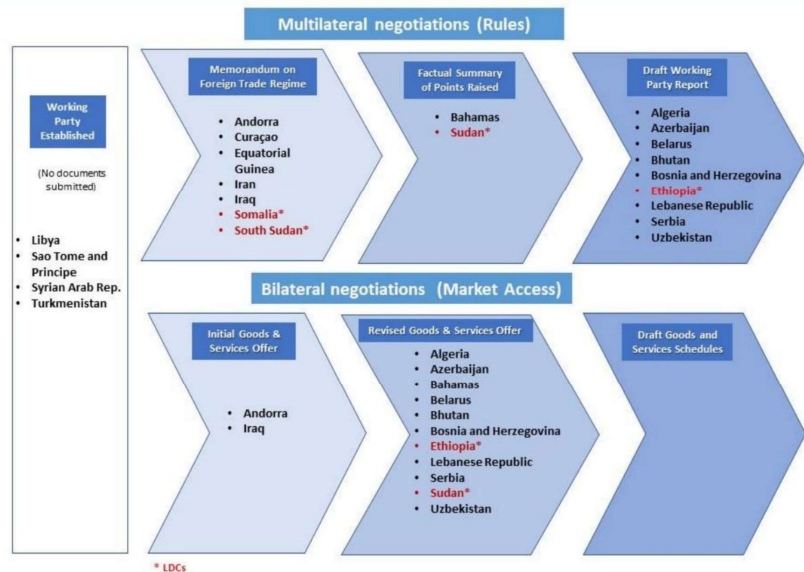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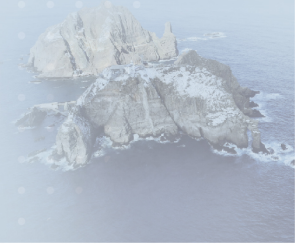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출처: WT/ACC/47·
WT/GC/269, 18p

또한 총회에서 세계 무역 환경의 경제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변화, 기술 발전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WTO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 격화 조짐, 지식재산권 등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의 미진전, 2019년 이후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다.



중국,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WTO 분쟁 제소

2025년 2월 1일 미국의 중국 생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자마자 같은 달 4일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일부 수입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텅스텐 등 원료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5일 중국은 WTO에 미국의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적용한 새로운 관세 조치⁶⁾에 대한 미국과의 분쟁 협의(Requests for consultations)⁷⁾를 요청했다.

미국의 WTO 분쟁 절차 참여 가능성

현재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⁸⁾ 모든 통상 분쟁이 패널 및 항소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WTO 분쟁해결 절차의 일부는 기능을 하고 있다. WTO 상소기구의 위원 선임 절차를 거부하는 미국도 WTO 분쟁해결 절차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절차에는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베트남이 미국의 생선 필렛 반덤핑 조치에 대해 WTO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패널 절차⁹⁾를 통해 2025년 1월 양국은 해결책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로 인해 패널 판정 이후 상소가 제기되어도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무기한 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이 제3자로 참여하고 있는 파나마의 코스타리카 수입에 대한 조치(DS 597)는 현재 상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기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¹⁰⁾

6) 미국은 2025년 2월 1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1702(a)(1)(B)에 근거하여 2025년 2월 4일 12시 이후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2022.1.12시 이전 미국 수출을 위한 선적품 제외)에 미국 수입 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95 of February 1, 2025)을 발표했다.

7) 중국은 미국이 GATT 1994의 일반적 최혜국 대우(제1조 1항) 및 체약국은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제2조 1항(a) 및 (b)) 조항을 위반하였다 주장한다.(G/L/1561 ; WT/DS633/1)

8) 2017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2017.1.20.~2021.1.20.)는 상소기구 위원 임기 연장 및 신규 위원 선임 절차를 거부하였다. 이는 미국이 상소기구의 '사법적 월권행위(judicial overreach)'를 문제 삼아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불만을 2018년 무역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 보고서와 미 무역대표부(USTR) 상소기구 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낸 바 있다.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절차 거부로 인해 2019년 12월 10일(위원 2명 임기 만료) 이후에는 7인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 중 한 명만(Hong Zhao, 2020년 11월 30일 임기 만료) 남게 되었다. 상소기구에 회복되는 분쟁사건의 심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의 위원이 필요한데 2019년에 이미 WTO 상소기구 제도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

9) 베트남-미국 생선필렛 반덤핑 조치(DS 536) 분쟁 해결 절차 진행 사항: 협의 요청(2018.1.8.), 패널 요청(2018.6.8.), 패널 구성(2018.7.20.), 패널 보고서 발행(2020.2.7.),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배포하지 못하였고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2025년 2월 14일까지 최종 보고서 회람이 연기됨, 베트남-미국 합의 통보(2025.1.17.), 패널보고서 배포(2025.2.5.)



정책적 시사점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도 패널 절차에는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중국의 WTO 제소도 패널 단계에서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소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패널 판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또는 유사한 조치를 통해 보복할 경우, 대통령은 이 행정조치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관세 범위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다(제2조(c))’고 명시하고 있어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심화 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다변화, 핵심 산업 보호, 외교적 균형 조절,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출처 : [1] WTO, ‘United States – Additional tariff measures on goods from China –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hina(G/L/1561 ; WT/DS633/1)’
 [2]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l (검색일: 2025.2.25.)
 [3] WTO,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5_e/ds633rfc_05feb25_e.htm(검색일: 2025.2.25.)
 [4] 미국 연방관보,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2/07/2025-02408/imposing-duties-to-address-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5.2.25.)
 [5] 외교안보연구소, ‘WTO 상소기구 제도의 현황과 전망(2020.3.4.)’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View.do?sn=13539&boardSe=pb>(검색일: 2025.2.25.)

10) 파나마-코스타리카 수입에 대한 조치(DS 597) 분쟁 해결 절차 진행 사항: 패널 보고서 배포 (2024.12.5.), 파나마 항소 통보(2025.1.24.)



아시아

한국-중국

전문연구원 김 지 혜

중국, 한중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무단 설치

중국,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를 무단 설치 한 것이 지난 1월 9일 알려졌다. 우리 정보 당국이 정찰 위성을 통해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를 포착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2024년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대규모 구조물 2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12월에도 1기를 추가 설치한 것이 드러나 이를 발견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즉각 항의한 바 있다. 중국은 ‘어업 보조 시설’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나, 우리 정부는 중국이 앞으로 이 수역에 12기의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보다 면밀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6. 2022년 발견된 중국이 몰래 설치한 석유 시추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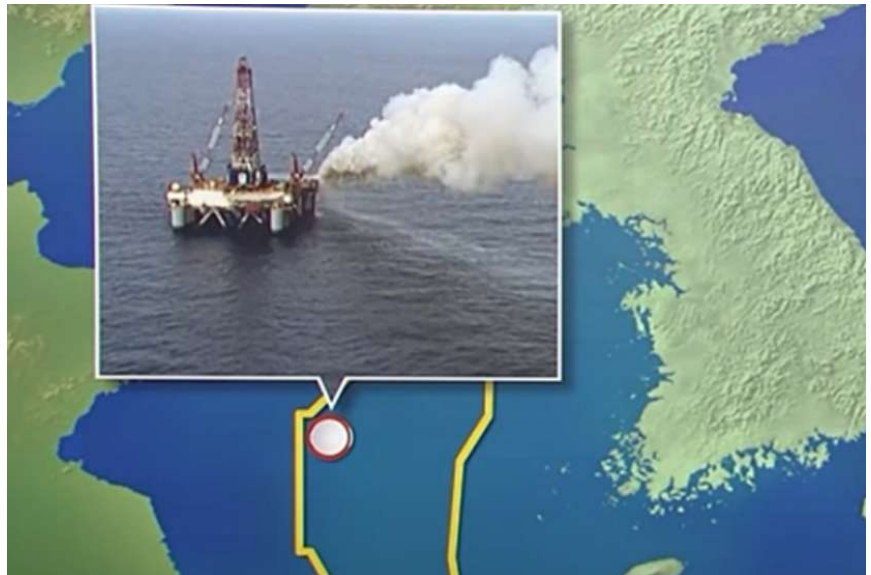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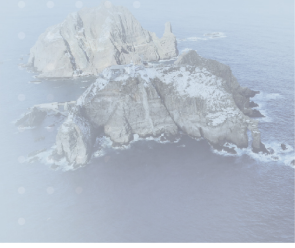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출처: SBS(2022.5.3.)

한중잠정조치수역 체결 배경 및 갈등 현황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EEZ)이 선포되었는데, 한반도 주변 수역은 그 폭이 대부분 400해리 미만



인 관계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수역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양영토가 중첩되는 수역이 발생하는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에서는 관련국들에게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경계획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이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기적인 기간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¹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국은 1997년부터 제1차 한중 EEZ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해 왔으나, 한중 EEZ 경계획정 방식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 판례에 따라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영토 면적, 거주민의 수, 해안선 길이, 해저 지형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획정하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¹²⁾

이에 따라 양국은 2001년 EEZ 경계를 획정하기 전까지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에서는 항행과 어업 행위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 설치나 해저 자원 개발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제3항¹³⁾과 제83조제3항¹⁴⁾에서는 이와 같이 과도기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두고 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은 이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어떤 활동이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관련 판례로는 그리스-터키 간 에게해 대륙붕 사건(1976), 가이아나-수리남 간 중재사건(2007), 가나-코티디부아르 해양경계획정사건(2017) 등을 참고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 기준, 신의성실의 의무, 개연성 검토 등이 언급되지만,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11)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12) 한경(2021.11.24.)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서해 EEZ 경계 논리”

13)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에 관한 조항

14) 대륙붕이 중첩되는 수역에 관한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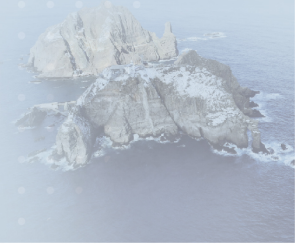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7. 한중 잠정조치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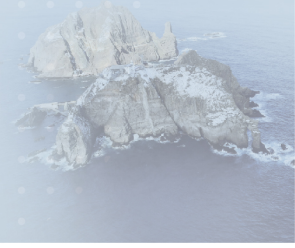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출처: 한경(2021.11.24.)

한국과 중국은 과거부터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005년에는 우리나라가 이곳에서 석유 시추를 시도하자 중국의 반발로 중단하였으며, 반대로 2008년에는 중국이 석유 시추를 시도하여 우리나라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2022년 4월에는 중국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여, 한국 정부가 반발하자 “어업 시설”이라고 해명한 바 있으며, 2024년에 들어서 4월에는 철골 구조물 2개를 설치하고 12월에도 1개를 추가 설치하여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¹⁵⁾

시사점

한국과 중국 간 EEZ가 중첩되는 수역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에 따라 해당 수역을 규율하기 위한 잠정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5) 조선일보(2025.1.10.), “한국 혼란 틈타 서해 노리는 중국...대규모 구조물 무단 설치” 기사 참조



중국이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규정한바 있고 서해에서의 무단 구조물 설치 등의 움직임들은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군사 기지로 전환했던 사례로 보아 유사한 방식으로 서해에서도 실질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1] 조선일보, “한국 혼란 틈타 서해 노리는 중국...대규모 구조물 무단 설치”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1/10/SF6DMUXXEBHGJMXIY3AUJIYJBQ/>(검색일: 2025.2.19.)
- [2] 뉴스핌, 윤상현 ”정부,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설치한 중에 강력 대응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205001047>(검색일: 2025.2.19.)
- [3] 서울신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中 석유시추 구조물, 5일 NSC 회의에서도 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64369>(검색일: 2025.2.19.)
- [4] IPDEFENSEFORUM, “분석가들,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한국 주권에 대한 압박 신호”, <https://ipdefenseforum.com/ko/2025/01/%EB%B6%84%EC%84%9D%EA%B0%80%EB%93%A4-%EC%A4%91%EA%B5%AD%EC%9D%98-%EA%B5%AC%EC%A1%B0%EB%AC%BC-%EC%84%A4%EC%B9%98%EB%8A%94-%ED%95%9C%EA%B5%AD-%EC%A3%BC%EA%B6%8C%EC%97%90-%EB%8C%80%ED%95%9C-%EC%95%95/>(검색일: 2025.2.19.)
- [5] SBS, ”잠정조치수역에 등장한 중국 구조물...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9414#close(검색일: 2025.2.19.)
- [6] 한경,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서해 EEZ 경계 논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1242228Y>(검색일: 2025.2.19.)
- [7] 이기범(2019), “경계미획정 수역을 규율하는 국제법적 체제에 관한 비판적 소고 -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3개월 내 행사계획

제1차 BBNJ 협정 준비위원회 | 2025년 4월 14일 ~ 4월 25일 / 제네바

- 주요 내용 유엔총회 결의안 78/272에 따라 BBNJ 협정 발효 준비와 제1차 당사국협정 개최 준비를 목적을 설립된 준비위원회로 유엔총회 결의안 78/560에 따라 개최되는 첫 번째 준비위원회 회의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 2025년 4월 28일 ~ 4월 30일 / 부산

- 주요 내용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 어업,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 6가지 기본의제와 개최국이 선정하는 특별의제에 관한 패널토론과 실천공약 발표 진행하며, 2025년에는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해양디지털'이 특별의제로 선정됨

2025년 유엔 세계 해양의 날 | 2025년 6월 8일 / 니스

- 주요 내용 2025년 유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DOALOS)가 Oceanic Global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

2025년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 2025년 3월 19일~5월 14일 / 서울 연세대학교

- 주요 내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와 연세대학교가 함께 국제해양법과 현안 문제를 강의하는 아카데미